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(☎880-44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7. 11. 19.

인천광역시남구청장

1. 결정취지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공청사)의 변경 사항임.
2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공공청사	청사	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31-1 일원	29,190.4		29,190.4	2000.12.26	

○ 변경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공공청사	지형도면 정정고시	○ 지형도면 축척사항 정정 고시

3. 지형도면 : 별첨(게시생략)